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. 3. 24 선고 2016가단19384 판결

[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7. H

변론 종결2017. 3. 10.

판결 선고2017. 3. 24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B는 별지 기재 부동산 중 3/15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69.

6. 3. 접수 제44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,

나. 피고 C, D, E, F, G, H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각 2/15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

파주등기소 1969. 6. 3. 접수 제44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

각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피고 B, C, D, E, H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피고 F, G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박미선

별지